

산재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토론회 2021. 11. 11

산재(사망)노동자가족 지원정책 제안

발표자: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법적 권익 옹호 측면
 - 산재사업장의 산재관련 자료 제출 규정 보완
 - 자료제출 요구권이 산재승인 신청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규정됨
 - 산재승인 신청인에게도 질문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하고 불응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방식의 법 개정 필요(판례에는 이런 사례 존재함)
 - 현행 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권한과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대해 과태료 조항의 임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구조상 촘촘한 조사가 용이하지 않음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법적 권익 옹호 측면
 - 법률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국가의 중재역할 강화)
 - 현재 시스템은 산재 증명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개인이 거대 법인인 회사와 상대해야 하는 불공정함이 내재해 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산재 당사자나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음
 - 산재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재 가족의 구체적 권리 침해 가능성 상존함
 - 산재승인관련 법적 절차, 산재 불승인시 불복 절차, 산재이후 회사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실질적 지원 측면
 - 장학 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의 대상 포괄성 확대
 - 산재법상 이러한 사업의 대상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규정’에서는 유족, 중증 요양상태 또는 장애 1-7급 등의 가족으로 까지 확장하고 있음
 - 산재법상 사업 대상을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에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변경필요
 -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이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장학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로 까지 확대 필요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실질적 지원 측면
 - 근로복지공단
 - 산재가족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강화
 - 의료기고나 방문 ‘현장 요양서비스’가 과잉서비스 제공 감시 역할에 치중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현장 요양서비스의 애초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정보 제공과 함께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가족 간병료 현실화가 필요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실질적 지원 측면

- 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의 기능 강화 및 법적 지위 확립(현재는 재정지원사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에 비례한 슬라이딩 방식의 본인 부담금 방식을 통해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긴급위기가족 서비스 대상인 재난가족에 대한 정의를 산재가족도 포괄하도록 확대 재규정
-

단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권익 옹호 방안
 - 실질적 지원 측면
 - 정신건강복지센터
 - 취약계층 중증정신질환관리에서 일반인 정신건강관리로 정신건강 서비스체계의 실질적 전환을 통해 산재가족의 접근성 제고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자살 산재유족의 접근성 제고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재난의 범주에 산재를 포괄함으로써 산재가족의 접근성 확대

중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러나 소득 기준이 존재(선별적)
 - 고용노동부: 산재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한정적 그러나 소득기준이 엄격하지 않음(보편적)
 - 행안부: 일회성(긴급한 사유), 보충성(다른 지원체계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 제공)
 - 산재가족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재가족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제한적
 - 특히 산재가족에 특화된 통합지원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
-

중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 시스템의 방향

- 산재발생 시점에서의 권익옹호 및 긴급가족지원,
 -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돌봄 등 가족지원
 - 장기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조모임 지원 등
 - 산재가족에게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기가족 또는 재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의 사업들에 산재가족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적으로 산재가족 지원의 Gateway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근로복지 공단을 중심으로 구축



중기 정책 과제

-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
 - 산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에 동료지원활동가(상담가)의 역할 규정
 - 단발적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노조, 시민대책위, 유가족 모임 등 민간지원 체계와의 협력 모델 구축
 -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재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구축

장기 정책 과제

- 재난가족지원법의 제정
 - 산재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산재의 특수성에 국한된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 개인적 재난을 포괄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 가족들이 경험하는 소득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다층적 욕구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

장기 정책 과제

- 보편적 사회적 보호/보편적 사회서비스에 포괄되는 산재가족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의 사회보장 특히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보호 중심, 자산조사 기반의 선별성을 특징으로 발전해 왔으며, 당면한 문제에 대한 파편적, 분절적, 임시방편적 접근이 지배적이었음.
 - 또한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산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산재가족에 대한 또 다른 구별 짓기로 작동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재가족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산재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한국 복지국가에 '보편성'을 층화(layering)해 가는 과정, 모든 시민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 산재관련 정책들이 통합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가족지원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결론

- 질적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중 하나는 공적인 산재가족 보호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대책 위 등 민간보호체계는 산재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음. 이는 반대로 이러한 보호체계 외부에서 살아가는 산재가족의 경우 산재 승인 및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자살 산재유가족들은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산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음. 산재승인 신청 자체를 꺼려하거나 법인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해하는 산재승인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음.
 - 산재가족들에게 죽임이나 장애는 산재보상금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보는 통상적인 불편한 시선들은 산재가족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있었음
 -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협임. 따라서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동정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재난, 보편적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가장 근본적이며 최우선적 과제는 작업장에서 산재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
-

감사합니다